

제 1511 호  
1990. 9. 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고 건  
 편집인 : 공 본 관 유 천 수  
 전 화 : 731-6111-3  
 단 쇠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 735-3337

# 시 보

## 차 례

● 고 시

제285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도로)실시계획인가(변경) ..... 3

제286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시행허가 ..... 3

제294호 기정제건축선변경결정 ..... 6

● 공 고

제491호 관인제교부공고 ..... 7

제494호 전용주거지역내연립주택및다세대주택건축가능지역공고 ..... 7

제495호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해제 ..... 7

(이면계속)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무원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1797

● 구 고 시	
제16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강남)	8
제20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성북)	8
제21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양천)	9
제22호 도시계획사업(학교)변경시행허가(노원)	10
제22호 도시계획사업(학교)변경시행허가(양천)	10
제23호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시설)변경시행허가(노원)	11
제31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강동)	11
제31호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변경시행허가(송파)	11
제63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구로)	12
제64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구로)	13
제6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3
제70호 용마자연공원조성사업기간변경시행허가(중랑)	14
● 구 공 고	
제 82호 투기과열지구지정공고(서초)	14
제 99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송파)	14
제115호 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실시계획공람공고(도봉)	16
제116호 연차별집행계획수립(도봉)	17
제131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동작)	17
제134호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실시계획공람공고(동작)	19
● 사 업 소 고 시	
제22호 하천의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	19
제23호 하천의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	19
제24호 하천점용허가	20
● 사 업 소 공 고	
제76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및폐기	20
● 시 교 육 위 원 회 고 시	
제23호 학교시설시행계획변경승인	22
● 건 설 부 고 시	
제54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23
● 사 련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285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 도로)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67호('81. 3. 10)로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 도로) 실시계획 인가한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을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변경)하고, 동법시행령 제27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서초구청(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약 14일간 이해 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0. 8. 27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변경없음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다. 사업의 규모

구 분	당 초	변 경
공용의청사부지	32,245.2평	29,811.37평
도 로	400.8평	-

라. 사업시행자

당 초	변 경
서울특별시장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당 초	변 경
'81. 3 - '82. 12	'81. 8 - '93. 12. 30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 권리 명세: 서초구 서초동 967번지 일대
-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 관계인의 주소, 성명: 기술특별시장(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공.

●서울특별시고시제286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8호('80. 1. 29)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을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하고, 동법 제2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서초구청(도시정비과)에 배치하여 약 14일동안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0. 8. 27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서초구 서초동 967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
- 대법원청사 및 대검찰청사 신축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법원행정처장
-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법무부장관

- 라.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서울특별시장(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로부터 '93. 12. 30. 까지  
 바. 사업시행 규모  
 (1) 대법원 청사  
 ○ 대지면적: 56,275.1㎡  
 ○ 시설규모  
 - 건축 면적: 8,950.4㎡  
 - 건축연면적: 72,651㎡  
 (지하1층, 지상17층)  
 (2) 대검찰청 청사  
 ○ 대지면적: 38,932.2㎡  
 ○ 시설규모  
 - 건축 면적: 2,667.4㎡  
 - 건축연면적: 43,629.06㎡  
 (지하4층, 지상14층)  
 사.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아. 공사설계도서: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끝.

토 지 조 서 (대법원청사)

\* 서초구 서초동

지 번	지 목	지 적 (㎡)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967	대	1,425	1,425	서울시장		
967-10	"	1,505	1,505	"		
-11	"	4,240	4,240	"		
-14	"	1,560	1,560	"		
-96	"	608	608	"		
-97	"	145	145	"		
-98	"	894	894	"		
-99	"	1,300	1,300	"		
-100	임야	2,627	2,627	"		
-101	"	95	95	"		
968-3	전	3,469	3,469	"		
1000	"	413	413	"		
1728--11	공원	528.6	528.6	"		
1731-5	대	543.9	543.9	"		
-11	"	397.6	397.6	"		
-21	"	3,543.4	3,543.4	"		
1732-1	"	2,176.2	2,176.2	"		
-2	"	742.6	742.6	"		
-5	"	282	282	"		

지 번	지 목	지 격 (㎡)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1733-1	대	357.2	357.2	서울시장		
-2	"	359.3	359.3	"		
-3	"	372.8	372.8	"		
-4	"	339.6	339.6	"		
-5	"	308.2	308.2	"		
-6	"	271.3	271.3	"		
-7	"	386.9	386.9	"		
-9	"	20,179.3	20,179.3	"		
-17	"	2,664.4	2,664.4	"		
1734-1	"	468	468	"		
-2	"	1,299.3	1,299.3	"		
-3	"	200.7	200.7	"		
-4	"	269.9	269.9	"		
1736-4	도로	122.7	122.7	"		
-8	"	2,180.2	2,180.2	"		
계		56,275.1	56,275.1			

## 토 지 조 서 (대검찰청청사)

소 재 지	지 목	지 격 (㎡)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서초구 서초동 967-2	대	379	379	서울시장		
967-3	"	1,022	1,022	"		
967-4	"	925	925	"		
967-5	"	1,959	1,959	"		
967-7	"	731	731	"		
967-8	"	468	468	"		
967-9	"	174	174	"		
967-90	도로	61	61	"		
967-95	임야	2,058	2,058	"		
1727-1	대	6,973	6,973	"		
1728-1	"	298.9	298.9	"		
1728-2	"	209	209	"		
1728-3	"	166.5	166.5	"		
1728-4	"	172.7	172.4	"		

30-6

제1511호 시

보 1990. 9. 1

소	재	지	지목	지적(㎡)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서초구	서초동	1728-5	대	1,530.3	1,530.3	서울시정		
		1728-7	공원	463.2	463.2	"		
		1728-8	대	6.8	6.8	"		
		1728-9	"	20.7	20.7	"		
		1729-1	"	789.4	789.4	"		
		1729-3	"	463.4	463.4	"		
		1729-4	"	610	610	"		
		1729-5	"	2,002.5	2,002.5	"		
		1729-6	"	1,652.1	1,652.1	"		
		1729-8	"	568.9	568.9	"		
		1729-9	"	837.2	837.2	"		
		1729-12	"	1,464.2	1,464.2	"		
		1730-1	"	2,863.2	2,863.2	"		
		1730-3	"	184.7	184.7	"		
		1730-4	"	464	464	"		
		1730-5	"	634.4	634.4	"		
		1730-9	"	332.4	332.4	"		
		1730-10	"	314.3	314.3	"		
		1730-12	"	518.1	518.1	"		
		1731-1	"	1,082.1	1,082.1	"		
		1733-8	임야	714.7	714.7	"		
		1736-1	도로	1,510.5	1,510.5	"		
		1736-2	"	2,993.6	2,993.6	"		
		1736-3	"	618.4	618.4	"		
		1736-7	"	696.5	696.5	"		
계				38,932.7	38,932.7			

◎서울특별시고시제294호

지정제 건축선 변경 결정

1. 서울특별시 지정제 건축선을 건축법 제30조2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하였기 동법

제30조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축지도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0. 9. 2



서울특별시

가. 지정계 건축선 변경 결정 조서			
구분	폭	원연장	중점비고
기장	3.0m	23m	중로 창신 418-4, 중로 창신 425-5
현장	3.3m	23m	중로 창신 418-4, 426-1, 중로 창신 425-4, 425-6

나. 관계도면 : 생략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공 고</div> <p>●서울특별시공고제491호</p> <p style="text-align: center;">관인재교부공고</p> <p>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관인을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재교부함을 동규칙 제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8. 27 서울특별시장</p> <p>1. 사용개시 및 폐기일자 : 1990년 9월 1일 2. 인영</p>		공람공고한 아래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9조, 건축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축가능 구역으로 지정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510-1385)와 건축과(510-139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p style="text-align: right;">1990. 8. 30 서울특별시장</p> 가. 전용주거지역내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축가능구역 지정조서	
구역	위	치	면적(㎡) 비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18외 13필지		4,844
2	" " " 25외 10필지		4,279
3	" " " 24외 18필지		8,196.6
4	" " 북삼동 623-3외 5필지		1,315.6
5	" " " 670외 95필지		26,325

인영	신규	폐기
		
공인명	성북구청장인	

●서울특별시공고제494호  전용주거지역내연립주택및다세대주택 건축가능구역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450호 ('90. 7. 29)로		나. 관계도면 :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495호  주택건설 사업자 영업정지 해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 3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 해제 처분을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1990. 8 서울특별시장</p>
--	--	--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영업정지일자	영업정지기간	영업정지해제일자	관련근거조항
83-6	경보주택	이창비 이창호	성동 자양동 216-7	'90. 2. 28	'90. 3. 1 -8. 31	'90. 9. 1	주택법시행령 10조의3
85-250	(주) 신항주택	김영언	성동 횡달동 319-36	"	"	"	"
86-117	(주) 동인 종합개발	김주진	성동 화양동 151-18	"	"	"	"
87-41	(주) 남경 주택건설	배방근	성동 능동 240-3	"	"	"	"
88-96	(임대) 급정주택	정기택 정재욱	성동 옥수동 262-13	"	"	"	"
89-158	(주) 대정 주택산업	조진호	성동 자양동 553-501	"	"	"	"
89-168	(주) 동남아 건설	양해준	성동 자양동 233-4	"	"	"	"

구 고 시

●강남구고시제16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강남구 도곡동 883-9외 25필지상의 주택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  
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990. 8. 24

강 남 구 청 장

1. 민영주택건설사업 승인내역
  - 가. 사업명: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 나. 사업주체: 혜화전신전화국의 1개주택  
조합
  - 다. 사업시행지위치: 강남구 도곡동 883-  
9외 25필지
  - 라. 대지면적: 9,519.0㎡

- 마. 사업규모: 아파트3동 5-15층 211세대
- 바. 건축연면적: 25,345.98㎡
- 사. 사업비: 15,456,840천원
- 아. 사업기간: '90. 8 - '91. 11
2. 도면: 별첨과 같음(생략)
3. 기타: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주택과에 비  
치 보관

●성북구고시제20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시고시제10호('89. 2. 28)로 도시계  
획시설(도로)결정고시되고, 서울시고시제  
486호('85. 7. 22)호로 변경고시된 북악산  
길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성북구 고  
시제11호('90. 12. 20)로 공담공고하고 성  
북구고시제1호('90. 1. 12)로 실시계획인가  
된 북악산길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26조, 같은법 시행  
령 제26조, 2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토목과와 주택과에 비치하고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8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돈암동 74-202 - 안암동 산1-41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북악산길 연결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변동없음

라. 사업시행사: 성북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동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소재지, 지번, 지목, 지력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추가): 별첨

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

사. 기타사항: 위치도 및 관계서류는 성북구청(토목과, 주택과)에 비치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면적 규격 (㎡)	실제이 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돈암 74-223	주택	스레트 세멘트벽	4	주택	박연이	돈암 74-17		토목과
2	"	점포	스레트 세멘트벽	16	점포	박연이	"		
3	"	주택	목조기와 세멘트벽	1	주택	박연이	"		
4	"	주택및 점포	스레트 세멘트벽(2층)	31	주택및 점포	최심원	"		토목과
5	"	주택	세멘기와 세멘트벽	1	주택	오상오	돈암 74-260		
6	"	주택	세멘기와 세멘트벽	28	주택	오윤화	돈암 74-308		토목과

다. 관계도면: 생략

고시합니다.

1990. 8. 25

양 천 구 청 장

◎양천구고시제21호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

다 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2. 사업주체: 한국건설(주) 사원주택조합의 2개 조합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규모

- 위치 : 양천구 목동 406-1의 2필지
- 면적 : 3,195㎡

- 규모 : 아파트15층 2동 98세대
- 4. 사업시행기간 : '90. 8-'91. 12

5.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시점	종점	비고
기	경	소	3	6m	49m	양천구 목동 406-231	양천구 목동 406-231
년	경	"	"	"	"	"	폐지

●노원구고시제22호

도시계획사업(학교)변경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3호('80. 1. 25)로 시행허가되고, 노원구고시 제69호('88. 3. 4)로 변경시행허가된 노원구 하계동 산16-38 일대 도시계획사업(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6조에 의하여 변경시행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8. 27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노원구 하계동 산16-38 일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학교)

명칭 : 혜성여자고등학교 시설 확충

다. 사업규모

- 대지면적 : 24,760㎡
- 건축면적 : 2,000.48㎡
- 연 면 적 : 8,142.53㎡

라. 사업시행자

- 당초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산16-38

학교법인 혜성학원 이사장 박정신

- 변경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산16-38 학교법인 혜성학원 이사장 이상순

마. 사업기간

- 당초 : '80. 1. 25-'89. 6. 30
- 변경 : '80. 1. 25-'91. 6. 30

●양천구고시제22호

도시계획사업(학교)변경시행허가

1. 양천구고시 제14호('88. 6. 20)호로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된 양천구 신정동 325-8, 학교법인 봉터학원의 봉영여자중학교와 양천 여자고등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칙한 위임조례 제5조에 의하여 변경 허가받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0. 8. 30

양 천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 : 양천구 신정동 325-8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

봉영여자중학교, 양천여자고등학교

다. 사업의 규모 : 대지 - 13,500㎡  
 건물면적 - 당초 : 9,543㎡  
 --- 변경 : 1,165.20㎡  
 \*(증2,307.20㎡)

라. 사업시행자주소 및 설명  
 : 영등포구양병동1가246번지  
 학교법인 봉덕학원이사장 이봉덕

마. 사업시행허가  
 : 당초 - '88. 6. 20 - '89. 6. 19  
 변경 - '88. 6. 20 - '91. 6. 19

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 학교법인 봉덕학원(조서생략)

사. 설계도서 : 별첨(생략)

◎노원구고시제23호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시설)변경시행허가

1. 노원구고시 제3호('88. 1. 15)로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시설) 시행허가되고 동고시 제18호('90. 7. 23)로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시설) 변경시행 허가된 노원구 상계동 210일대 종합의료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8. 29  
 노 원 구 청 장

- 아 래 -

가. 사업시행지 : 노원구 상계동 210일대  
 (상계북지개발사업지구내)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

시설)

다. 사업시행자 : 중구 거동2가 35,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장 박낙조

라. 변경내용 : 건축면적(연면적)증축

당초 : 2,637.05㎡(34,181.36㎡)

변경 : 2,637.05㎡(34,277.24㎡)

\*저상층면적 95.88㎡ 증가

◎강동구공고제31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98호('71. 4. 7)로 도시계획 시설(도로)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8호('73. 12. 26)호로 지적 승인된 강동대로 →시계간 도로확장 공사를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인가됨 받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공고합니다.

2.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가. 공람기간 : '90. 8. 29 - '90. 9. 11

나. 공람장소 : 강동구청 토목과  
 (480-1405-7)

1990. 8

강 동 구 청 장

공 램 개 요

1. 사업명 : 강동대로-시계간 도로확장공사
2. 사업시행구간 : 둔촌동 229-산31
3. 사업시행규모 : 도로확장 B= 25m, L=120m
4. 사업시행장 : 강동구청장

5.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6. 기타사항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공람 장소에 제출 및 문의 바랍니다.
------------------------------------	---

토 지 조 서

지 번	지목	면 적	주 소	성 명
둔촌동 229-9	담	13	도봉구 쌍문동 409-29	이성호
" 229-8	담	15	시 유 지	
" 218-1	전	221	"	
" 산31-1	임	1,208	"	
" 229-1	담	548	"	
" 31-6	임	59	영등포구 여의도동 1-681 서울(아)1동 609호	이홍조
" 31-7	"	37	"	
" 31-8	"	26	시 유 지	

●**송파구고시제31호**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변경시행허가**

1. 송파구고시 제38호('88. 12. 6)로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허가된 송파구 장지동 166번지의 5필지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변경시행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과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사업의 변경시행을 허가하고 도시계획법 제24조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판계도서는 송파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8. 25

송 파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송파구 장지동166번지의 5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변경시행

다. 사업의 규모 - 부지면적 : 4,974㎡  
- 건축면적 : 711.6㎡

- 건축연면적 : 1,635.6㎡

라. 사업시행자 : 서울시 송파구 구의동59-13 동부운수(주) 대표 정용락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 초 : '88. 12. 6 - '90. 8. 31

- 변 경 : '88. 12. 6 - '90. 12. 31

바. 기 타 : 종전허가 내용과 같음

●**구로구고시제63호**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8. 25

구 로 구 청 장

- 다 - 음 -		2. 사업주체: 서울시 교육위원회와 5개 주택조합						
1. 사업명: 민영주택 건설사업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2. 사업주체: 제2차 해태제과 직장주택조합		가. 위치: 구로구 신도림동 312번지 2호외 4필지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나. 대지 면적: 8,443평방미터						
가. 위치: 구로구 신도림동 312번지 17호외 2필지		다. 건축연면적: 27,072.12평방미터						
나. 대지 면적: 6,132.00평방미터		라. 규모: 아파트3동 239세대						
다. 건축연면적: 17,768.50평방미터		4. 사업시행기간: '90년 8월 - '92년 2월						
라. 규모: 아파트2동 169세대		◎구로구고시제65호						
4. 사업시행기간: '90년 8월 - '92년 2월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구로구고시제64호		1. 서울특별시고시 제66호('90. 3. 12)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시기 이를 고시합니다.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 및 광명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8. 27 구로구청장						
1990. 8. 25 구로구청장								
- 다 - 음 -								
1. 사업명: 민영주택 건설사업								
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시점	종점	비고
기정	대로	3	86	25-33.5	6,950	양화동 (광-16)	광명시계 (광1-19)	
변경	대로	3	86	25-35.1	6,950	"	"	위치변경 및 폭원확장 구로구 고척동 631- 광명시 철산동 9-123간 폭원: 25m → 25m - 29m 연장: 619m
나.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끝.								

●중탕구고시제70호

용마자연공원 조성사업기간변경시행허가

1. 서울시고시 제225호('83. 4. 18)로 공원 조성 시행허가되었으며 서울시고시 제432호('89. 9. 20)로 사업기간 변경허가된 용마자연공원 조성 땅우지구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도시계획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기간 변경시행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1990. 8. 31

중 탕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중탕구 땅우동 산69-1번지 일대

나. 사업종류 및 명칭: 용마자연공원조성 사업기간 변경 시행

다. 변경내역: 사업기간 변경시행

구 분	착 공	준 공
당초사업기간	'83. 5. 2	'90. 8. 30
변 경	'83. 5. 2	'91. 8. 30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중탕구 땅우동 .389-2

용마자연공원(땅우시설지구) 대표 신청 권

마.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착 공 : 1983. 5. 2

준공예정일: 1991. 8. 30

**구 공 고**

●서초구공고제82호

· 푸기과일지구지정공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푸기과일지구들 지정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0. 8

서 초 구 청 장

다 음

1. 지정구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2525번지의 143필지
2. 면 적: 27,259㎡
3. 아 파 트: 방배 우성아파트
4. 규 모: 아파트 12층 9동 270세대
5. 사업주체: 주택개발 재개발 방배제1구역 조합장 김영규

●송파구공고제99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가 결정 지적승인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져 도시계획법 제25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2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행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를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90. 8

송 파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업시행지	사업종류 및 사업명칭	규모	사업기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자	지적고시일자
풍납동 80의23 ~ 풍납동 80의 44호간	도시계획사업 (도로)	B=6m L=36m	인가일로 부터 2년	서고시 제210호 ('75. 12. 19)	서고시 제210호 ('75. 12. 19)

나. 사업의 시행자 : 송파구청장  
 다. 사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사 : 별첨  
 라.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생략  
 마.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공람장소 : 송파구청 트로카 및 건설관리과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토목과  
 (전화 410-340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풍납동 80의 23-80의 44(풍납동 80의 7 도로개설 공사)	풍납동 80-46	대지	5	5	도로	한국철	풍납동 80-17		
	80-48	"	39	39	대지	강희권	풍납동 80-25		
	80-50	"	26	26	"	이우길	풍납동 80-7		
	80-52	도로	30	3	도로	김완기	서대문구 행촌동 201-33		
	80-53	"	4	4	"	홍영표	풍납동 80-23		
	80-54	대지	28	28	대지	"	"		
	80-55	"	18	18	"	채규은	풍납동 80-4		
	80-51	"	21	21	"	김형재	강원도영월군 하동면 와룡리 65		
80-19	"	35	35	"	공백숙	풍납동 80-26			
80-47	도로	6	6	도로	한국철	풍납동 80-17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지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풍납동 80의 23-80의 44 (풍납동 80의 7 도로개설공사)	풍납동 80-25	건물	연와조 색면외주	13.4 (㎡)	주택	강희권	풍납동 80-25		
	80-26	"	"	24.7 (㎡)	"	공백숙	풍납 80-26		
	80-23	"	연와조 색면외주	7.6 (㎡)	"	홍영표	풍납 80-23		
	80-4	"	"	5.9 (㎡)	"	김연수	풍납 80-4		

<p><b>◎도봉구공고제115호</b></p> <p><b>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실시계획공람공고</b></p> <p>1. 아래와 같이 시설결정, 지적승인한 다음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코져 도시계획법 제25조 2항 및 동 시행령 제27조2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p> <p>2. 토지(불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가. 사업개요</p>		<p>개별토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p> <p>3. 관계조서는 도봉구청 기록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시 의견을 공람 공고 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8 도 봉 구 청 장</p>				
사업시행지	사업종류 및 사업명칭	규 모	사업기간	결정고시일자	지적고시일자	비 고
수유4동279의190-279의9	도시계획사업(도로)수유4동279-280도로개설공사	B=6m L=110m φ450 L=110m	'90.9-'91.12	서고3호('69. 1.18)		좌 동
창3동449의102-108	도시계획사업(도로)창3동443의3-449의9	B=10m L=78m φ600% L=78m	'90.9-'91.12	서고185호('73.12.3) 건고9호('67. 1.21)		좌 동
번동387의36-387의38	도시계획사업(도로)번동458 도로개설	B=8m L=70m φ600 L=70m	'90.9-'91.12	건고9호('67.12. 1)		좌 동
미아5동375-15	도시계획사업(도로)미아5동375 도로개설	B=10m L=15m φ600 L=15m	'90.9-'91.12	서고124('88. 1.19)		좌 동
미아3동. 245의44-산19의88	도시계획사업(도로)미아4동49-번2동간 도로개설	B=15m L=150m φ450 L=300m	'90.9-'91.12	건고738('63.12.24)	건고2453('66. 6. 1)	
수유4동558의9	도시계획사업(도로)수유4동566-558도로포장	B=15m L=70m φ450 L=70m	'90.9-'91.12	서고3호('69. 1.18)		좌 동
미아8동734의34-32호	도시계획사업(도로)미아8동734의34알 도로개설	B=6m L=20m	'90.9-'91.12	서고3호('69. 1.18)		"



사업시행지	사업종류 및 사업명칭	규도	사업기간	결정고시일자	지적고시일자	비고
수유3동195외 13-195외14	도시계획사업 (도로)수유3동 392 도로개설	B=6m L=70m φ450 L=70m	'90.9-'91.12	서고3호 ('69. 1.18)	과 동	
창동452외60 -산197외6	도시계획사업 (도로)창동452 번지 도로포장	B=6m L=150m φ600 L=150m	'90.9-'91.12	서고185호 ( '73.12. 3)	-	
미아2동 791외 3266-867외 114	도시계획사업 (도로)미아2동 867-791간 도로개설	B=6-8m L=270m φ450 L=60m 박스1.5× 1.5 L=80m	'90.9-'91.12	서고3호 ( '69. 1.18)	-	

나.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지)조서 : 생략  
라. 위치도 및 계획 평면도 : 생략  
마.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공람장소 : 도봉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토목과 (901-5405~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봉구공고제116호

연차별 집행계획수립

-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도시계획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합니다.
-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연차별 집행계획조서(도로) : 별첨(사업장별 내역생략)  
나. 관련도면 : 생략

1990. 8. 25

도 봉 구 청 장

●동작구공고제131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 서울시 고시 제54호('73.4.30)로 도시계획 사업결정 및 지적승인된 사당동 164의 72-산18의 53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인가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관련도서는 동작구청 주택과와 도시정비

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광람한다.  
 가. 공람장소: 동작구청 2차역과, 도시정비과  
 나. 공람기간: 1990. 8-1990. 9  
 1990. 8  
 동작구청장

다. 공람개요

사업시행지	사업의종류 및 명칭	사업의규모	사업시행자	사업착수및 준공예정일	시설결정및지적승인근거
사당동164의 72-산18의53간	사당4구역진입도로 개설공사	B=6m L=100m	동작구청장	'90.9~ '90.12.31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서고시 제54호 ('73. 4.20)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지장물)의 소재지번, 지목 및 소유권 권리 명세: 별첨  
 마.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  
 바. 기타사항: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시기 바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 사업의 종류: 사당4구역 진입도로 개설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소유권이의의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내용
1	사당동 167-80	대	20	20	도로	최정자	사당동167-13	-	-	-	
2	사당동 167-14	"	83	83	"	장정희	사당동167-62	-	-	-	
3	사당동 164-54	답	89	89	"	서형수	노량진동 284-1	-	-	-	
4	사당동 164-7	대	36	36	"	윤영화	성북구 정릉동 564-6	-	-	-	
5	사당동 164-45	답	198	198	"	신문숙	강남구 반포동 770반포(아) 52동 203호	-	-	-	
6	사당동 164-60	대	89	89	"	박노관	관악구 봉천동 670-4	동작구청장		답류	
7	사당동 164-72	답	35	35	"	박정식	사당동164-71	-			
8	사당동 산18-53	임야	36	36	"	엄창호	용산구 원효로 1가 70				
계	8필지		586	586							

**◎동작구공고제134호**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73호(90. 8.25)호 시설조성계획변경 및 지적 승인된 사유신묘지공원 조성사업 변경에 대하여 서류의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0. 8. 27

동 작 구 청 장

- 공 답 개 요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유신묘지공원 조성공사
2. 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번동 155-1번지 일대

3. 사업시행규모 : 49,328㎡(기존관리사무실과 연결 제수고 증축)
4.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1990.12.31
5. 사업 시행자 : 사단법인 현창회
6. 시행 허가 조건 : 조성완료후 기부채납
7. 관계도서 : 생략
8. 기 타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공람 장소에 문의 제출 바람.

**사업소고시**

**◎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22호**

하천의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 허가기간 연장허가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0. 8. 25

한 강 공 원 관 리 사 업 소 장

허 가 년 월 일	위 치	지 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 가 를 받 은 자		
						주 소	성 명	
'90. 8.25	영등포구 여의도동85-1번지선(한강)의14개소	하천	1394.205㎡	식음료 판매시설(판매대및부대시설)	1990.8.28-1991.8.27	영등포구여의도동13-31	거한개발(주)	윤재철 안승학

**◎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23호**

하천의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

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 허가기간 연장허가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0. 8. 25

한 강 공 원 관 리 사 업 소 장

허가 년월일	위 치	지 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 를 받은 자		
						주 소	성 명	
'90. 8.25	영등포구 여의도동85-1번지선(한강)의2개소	하천	174.87㎡	이동식 판매시설(스낵카)	1990.8.30-1991.8.29	영등포구 여의도동13-31	지한개발(주) 대표이사 윤재철 안승락	

◎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2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0. 8. 25

한 강 공 원 관 리 사 업 소 장

허가 년월일	위 치	지 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 를 받은 자		
						주 소	성 명	
'90. 8.2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양동427-7번지선(한강)	하천	703.25㎡	유선장설치	'90.8.28-'91.8.27(1년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203	한창산업 대표 권태덕	

사업소공고

◎탄천하수처리장공고제76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및폐기

서울특별시 하수처리장 설치조례('89.12.27

서울특별시조례2540호)에 의거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 직인폐기 및 등록하였기 동규칙 제11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90. 9. 1

탄 천 하 수 처 리 장 장

직 인 등 록 조 서

회 계 명 : 하수처리장 특별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탄천하수처리장  
 직 명 : 서울특별시 탄천하수처리장 경리관인  
 사용개시일 : 1990. 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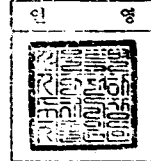
직 인 등 록 조 서

회 계 명 : 하수처리장 특별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탄천하수처리장

직 명 : 서울특별시 탄천하수처리장지출원인

사용개시일 : 1990. 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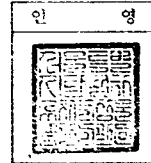
직 인 등 록 조 서

회 계 명 : 하수처리장 특별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탄천하수처리장

직 명 : 서울특별시 탄천하수처리장물품관리관인

사용개시일 : 1990. 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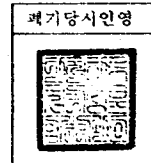
직 인 폐 기 신 고 서

회 계 명 : 하수처리장 특별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탄천하수처리장

직 명 : 탄천하수처리장 분임경리관인

사용기간 : 1987. 7. 3 - 1990. 9.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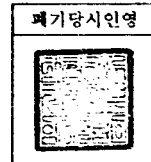
직 인 폐 기 신 고 서

회 계 명 : 하수처리장 특별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탄천하수처리장

직 명 : 탄천하수처리장 분임지출원인

사용기간 : 1987. 7. 3 - 1990. 9. 4



직 인 때 기 신 고 서

회 제 명 : 하수처리장 특별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탄천하수처리장  
 직 명 : 탄천하수처리장 물품관리관인  
 사용 기 간 : 1987. 7. 3 - 1990. 9. 4



시교육위원회고시

●교육위원회고시제3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 서울시 교위 고시 제75호('88.12.13)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된 서대문구 북아현동 190-1번지 일대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였기 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관리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추계학원 사무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90. 8. 9

교육위원회 교육감

-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학교법인 추계학원 이사장
-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중앙여자중·고등학교 특별활동실 증축사업
-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90-1번지 일대
- 라. 학교시설사업개요

- 1)교지면적 - 당초 : 18,500㎡  
- 변경 : 45,720.1㎡
- 2)건축면적 - 당초 : 기존건물 6,747.34㎡  
금회증축 1,555.95㎡  
계 8,303.29㎡  
변경 : 기존건물 6,637.93㎡  
금회증축 732.27㎡  
계 7,370.2㎡
- 3)건축연면적 - 당초 : 기존건물23,861.32㎡  
금회증축 5,584.45㎡  
계 29,445.77㎡  
변경 : 기존건물23,953.45㎡  
금회증축 2,773.27㎡  
계 26,726.72㎡
- 4)재 원 : 법인부담금
- 5)사업기간 : 확공예정일 - 당초 1988.12  
변경 1990. 5  
준공예정일 - 당초 1991. 8  
변경 1991. 5.31

- 라.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특별활동실 증축으로 교육여건개선
- 마.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 지면, 지목, 지적 소유자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토지수용법 4조3항의 관계인)토지조서 : 생략

**건설부고시**

◎건설부고시제54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서울번동지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였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관제서류사본은 서울특별시청과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90. 8

건설부장관

○사업인정조서

구분	사업종류	사업주체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당초	분양및 영구임대 주택건설	대한주택 공사사장	서울시도봉 구번동4-1 번지 일원	○대지면적 : 264,690㎡ ○건축연면적 401,091.9㎡ ○건설규모 ·분양아파트 22동 2,330호 ·영구임대아파트 27동 4,181호	112,854,604 천원 (국민주택자금 11,475,000 천원)	'89. 3- '92. 2.28
변경	"	"	"	○대지면적 : 256,650㎡ ○건축연면적 400,963.72㎡ ○건설규모 ·분양아파트 22동 2,330호 ·영구임대아파트 27동 4,181호	110,191,114 천원 (국민주택자금 11,475,000 천원)	"

**사 령**

◎1990년 8월 28일자

4급공무원 진보 및 파견

령 제326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이노근	내무국 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 ('90. 8.28 - '91. 8.27)	공무원교육원	지방서기관

◎1990년 8월 28일자				기술직 공무원 징계처분 변경		령 제327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근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정심사 위원회 결정(소청 90-78, '90. 8.20)에 따라 '90. 3.24 감봉 1월 처분을 동일자 전책으로 변경처분 함.		상수도사업본부 (선유수원지)		지방화공기사보		
◎1990년 8월 31일자				기능직 공무원 면직		령 제328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경미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시립부녀보호소		지방사무보조원 (조부 : 10등급)		
◎1990년 9월 1일자				기능직 공무원 파견		령 제329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전광용	정신병원 파견 ('90. 9. 1 - '90.12.31)		은 평 구		지방운전원 (기능직10등급)		
<b>공 무 국 외 여 행 명 령</b>							
여 행 자			여 행 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 행 목 적	
소 속	직 명	성 명					
상 공 과	지방행정 사무관	김재전	L.A, 시카고 워싱턴	'90. 9.20 ~10.4 (15일간)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부 담	비주지역 우수중소기업체 시찰과 미국지역기업연합회 방문	
주택개발과	지방건축 기획	임계호	나고야	'90.10.23 ~11.1 (10일간)	시 비 (546불)	ESCAP/인간정주관리위원회 Work Shop 회의참가	
행정과	지방행정 주사보	이윤근	싱가폴, 홍콩, 대만, 태국	'90. 9. 1 ~9. 8 (8일간)	한국메이 타통신(주) 부담	행정망사업 정상운영에 대비한 선진기술 전파 및 자료수집	
여 행 자			여 행 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 행 목 적	
소 속	직 명	성 명					
세종문화회관	지방 이 사 관	서정희	북 경	'90. 9.10 ~9.18 (9일간)	시 비	시립무용단북경공연	
			외61명	명단별침			



계1511호 시

보 1990. 9. 1

30-25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담당업무	비고
서경희	32. 6.22	세종문화회관	관장	지방이사관	인쇄부장	
홍사종	55.12. 1	"	운영계장	별정 5급	업무총괄	
변세건	55. 3.18	"		지방행정서기	행정(예산)	
송현엽	61. 8.19	"		기능10등급	조명디자인	
최정규	47. 3.17	"		별정 7급	조명조각	
민정수	66. 2.11	"		기능10등급	"	
박내선	52. 1.15	"		"	음향	
전명복	43. 6.12	"		"	무대장치	
박영배	58. 1. 4	"		"	"	
민정심	42. 9.26	"		"	의상소품	
배정혜	44. 2.21	시립무용단	단장	단장	안무	
한상근	53.11. 3	"	지도위원	단원	공연	
홍경희	56. 1.30	"	"	"	"	
허정	57. 2.27	"	단원	"	"	
신은희	66. 7.19	"	"	"	"	
이건왕	60. 9.14	"	"	"	"	
최효선	60. 8.17	"	"	"	"	
하경숙	56.12.26	"	"	"	"	
심민자	59. 2.25	"	"	"	"	
이원구	51. 2.10	"	"	"	"	
장명옥	55. 1.14	"	"	"	"	
김내균	56.10. 8	"	"	"	"	
안수옥	61. 9.30	"	"	"	"	
양인숙	60. 7.29	"	"	"	"	
김보영	62. 3. 5	"	"	"	"	
박영순	62.11. 7	"	"	"	"	
신규영	56. 8.19	"	"	"	"	
박현주	65. 5.28	"	"	"	"	
유현신	64. 2. 5	"	"	"	"	
왕미경	66. 3.23	"	"	"	"	
권범순	66. 3.13	"	"	"	"	
정은숙	62. 6.22	"	"	"	"	
배상복	59.11.11	"	"	"	"	
김기백	64. 8. 6	"	"	"	"	
양미애	67. 3.20	"	"	"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담당업무	비고
방승환	59.2.2	시립부용단	단원	단원	공연	
윤경아	68.8.28	"	"	"	"	
현임숙	65.10.20	"	"	"	"	
조윤철	64.5.12	"	"	"	"	
김용철	65.7.13	"	"	"	"	
양근수	66.9.18	"	"	"	"	
양대승	64.10.7	"	"	"	"	
박영주	64.11.1	"	"	"	"	
홍미영	66.5.2	"	"	"	"	
윤영란	67.5.5	"	"	"	"	
이경혜	64.7.10	"	"	"	"	
오경란	67.1.4	"	"	"	"	
임은희	67.5.20	"	"	"	"	
전경숙	67.12.17	"	"	"	"	
전진희	68.2.10	"	"	"	"	
최진영	67.5.14	"	"	"	"	
홍산자	재미교포 060361313	객원출연	안무자	안무자	안무자	2001년
김기인	53.11.27	"	단원	단원	출연	
이혜정	60.6.18	"	"	"	"	
박화경	63.12.29	"	"	"	"	
이희	81.12.1	"	"	"	"	2001년
김금판	63.5.18	"	"	"	"	"
김영희	57.8.3	"	안무자	안무자	"	어디란 치왔니
임수경	63.11.27	"	단원	단원	"	"
김은희	63.10.12	"	"	"	"	"
강미리	59.11.24	"	"	"	"	"
이매방	27.5.5	"	"	"	"	동년의 올림

서울특별시

<b>상수도사업본부사령</b>
------------------

◎1990년 9월 1일자 9급 기술직 공무원 정규임용(시보해제) 령 제98호

연번	성명	임용부서	임용직급	현부서	현직급
1	김한중 (641109-1)	중부수도 사업소	지방화공 지원보	중부수도 사업소	지방화공 지원보시보

5급 기술직 공무원 파견 해제 령 제99호

연번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현직급
1	유재룡 (520112-1)	급수부 파견근무를 해제함	동부수도사업소	지방수도토목 기과

지방전문직 공무원 신규임용 령 제100호

연번	성명	발령사항
1	박성주 (530816-1)	수도기술연구소 (수질연구부장 요원) 지방전입전문직 "가"급

◎1990년 9월 2일자 5급 기술직 공무원 인사발령 령 제101호

연번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현직급
1	유재룡 (520112-1)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위한 해의 파견 근무를 명함. (90년 9월 2일부터 93년 4월15 일까지) 총무부(서무과) 대기됨 명함.	동부수도사업소	지방수도토목 기과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용 직위 및 등급	근무부서	계약기간	비고
박성주	530816- 1	전입가급 (수질연구부장요원)	수도기술 연구소	'90.9.1- '93.8.31	수질향상대책 및 수질조사 분석등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별지 제2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이 제 용 (李 濟 龍)	소 속	아동병원 서부과
	본 적		직 명	지방조무원
주 소	인천직할시 남구 승의4동 248-171			

출석 이유      심문 및 진술

출석 일시      1990년 9월 12일 14시 00분

출석 장소      기획상황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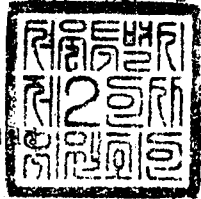
- 유의 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1990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 위

귀하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직 명	
	본 적					
주 소						

199 년 월 일 시에 개최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199 년 월 일

성 명

서울특별시제 2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본 적 항	성 명	홍 흥 렬 (洪 興 烈)		스 속	아동병원 서무과
	본 적			직 명	지방조무원
항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3동 32-8			
항	출 석 이 유	심문 및 진술			
항	출 석 일 시	1990년 9월 12일 14시 00분			
항	출 석 장 소	기획상황실			
항	유 의 사 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li> <li>2. 사정개 외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li> <li>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li> </ol>			
<p>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의 규정에 <u>일기</u>, <u>일일</u>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년 8월 24일</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 위원장</p> <p style="text-align: right;">귀하</p>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본 적 항	성 명		스 속		직 명
	본 적				
항	주 소				
<p>199 년 월 일 시에 개최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성 명</p> <p>서울특별시제 2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p>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장 칠 수 (姜 喆 洙)	소 속 직 명
	본 적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6번지 19	성동구 주력파 지방건축기원
주 소	서울 강서구 화곡동 933-42		
출 석 이 유	심문 및 진술		
출 석 일 시	1990년 9월 12일 14시 00분		
출 석 장 소	기획상황실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1990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본 적		직 명
주 소			
199 년 월 일 시에 개최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199 년 월 일 성 명			
서울특별시제 2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